

(주)헤인
기업지배구조헌장



전문

(주)혜인(이하 "회사")은 '행복한 미래를 함께하는 믿음기업'이라는 비전 하에 가치창조, 고객만족, 인재중심 경영을 실천하며 국내 최고의 에너지동력 및 종합건설기계 그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사는 다음과 같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증진한다.

제1장. 주주

제1조(주주의 권리)

1.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이익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 참여, 주주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을 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와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장한 권리를 가진다.
2.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정관 변경, 합병, 영업 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 해산, 자본의 감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3.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의 자유 의사에 따라 편리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회사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한다.
4.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주주의 공평한 대우)

1.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대우한다.
2.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며,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3. 회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주주의 책임)

1.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2장. 이사회

제4조(이사회 기능)

1.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중요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해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1. 이사회는 다양한 의견의 개진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3인 이상 7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2.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3. 회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이사는 성별, 연령, 국적, 인종, 종교, 출신지역, 교육수준, 장애 여부 등의 요소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5.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인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7.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이사회 운영)

1.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2. 이사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둔다.
3.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유지 및 보관한다.
4.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5. 이사는 필요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명문화된 별도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8조(이사의 의무 및 책임)

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6. 이사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9조(사외이사)

1.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당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겸직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집행 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제공한다.
4.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5.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회사의 부담으로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보상)

1. 이사회의 경영활동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결과는 보수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2.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감사기구

제11조(상근 감사)

1. 회사는 1인의 상근 감사를 둘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감사는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여야 한다.
3. 감사기구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사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활동에 대한 적법성 검사, 회사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검사,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에서의 사후보고 등을 수행한다.
5. 감사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 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6. 감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외부감사인)

1.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감사대상기업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감사대상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4.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4장. 이해관계자

제13조(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1. 회사는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투자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회사는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임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임직원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4. 회사는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립을 촉진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5.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준수한다.
6. 회사는 법령 및 제3자와의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제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제14조(공시)

1.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성실하고 신속하며 정직하게 공시한다.
2.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 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적시에 상세하게 공시한다.
3.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4. 회사는 중요한 기업 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5.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춘다.

제15조(기업 경영권 시장)

1.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영업 양수도 등 경영권의 변동에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 회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사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2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